

경 룬 시 행 규 정

경륜시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경륜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의2(교차발매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공단은 필요한 경우 경륜·경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주사업자(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포함한다.)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륜경주의 승자투표권을 교차하여 발매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경륜 경주를 교차 발매하는 경우 승자투표권의 발매,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경륜·경정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경주장 및 장외매장 시설에 한정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교차발매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경주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4조(승자투표권의 발매) ①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.</p> <p>② 승자투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, 2이상의 단위승자투표권의 내용을 1장의 표권에 표시한 복합승자투표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.</p> <p>③ 승자투표권은 경륜을 시행하는 경륜장안의 승자투표권 발매소 장외발매소 또는 이사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 및 방법으로 발매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제54조(승자투표권의 발매) ① 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으로 한다.</p> <p>② 승자투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하여 발매하되, 2이상의 단위승자투표권의 내용을 1장의 표권에 표시한 복합승자투표권으로 발매할 수 있다.</p> <p>③ 승자투표권은 경륜을 시행하는 경륜장안의 승자투표권 발매소 장외발매소 또는 이사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 및 방법으로 발매할 수 있다.</p> <p>제54조의2(교차발매) ① 공단은 필요한 경우 경륜·경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주사업자(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포함한다.)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경륜경주</p>

의 승자투표권을 교차하여 발매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경륜 경주를 교차 발매하는 경우 승자투표권의 발매,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경륜·경정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경주장 및 장외매장 시설에 한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교차발매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경주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